

심포 2003
지움 2. 7

2003년 토양환경보전대책

2003. 2.

환경부
토양보전과

토양환경관리의 기반구축

- ◇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토양복원대책 추진
- ◇ 토양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

1. 토양환경보전법 개정
2. 토양오염우려지역 전국조사 및 복원대책 추진
3.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
4. 토양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
5. 폐금속광산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

참고자료 : 토양환경보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책 (2002. 11)

1. 토양환경보전법 개정

-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양오염관리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추진
 - 토양복원업 등록제도 및 토양복원감리제도 도입,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근거규정 신설, 토양오염 발견 신고제 및 오염토양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 등 명문화

2. 토양오염우려지역 전국조사 및 복원대책 추진

2-1.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(2,000개 지점)

-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우선 순위를 결정, 연차적인 복원을 추진
 - 시·도에서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한 오염우려지역 파악
 - 산업단지, 유류저장시설등 토양오염우려가 높은 800여개소
 - 시·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오염우려지역 1,200개소

- * 오염지역, 오염범위 및 오염도 등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용역사업으로 수행
- 조사결과 기준초과시 토지용도,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인 복원 추진

2-2. 토양측정망 운영 (1,500개 지점)

- 측정망 운영을 통하여 오염추이를 파악하고,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토양복원을 추진

3.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

3-1. 특별토양오염유발시설 등 관리

- 노후 또는 방치 주유소 및 PCE·TCE 제조·판매·저장업소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책 수립
- 정유사 소속 「자발적 협약」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

3-2.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

- 수렵장, 클레이사격장 등의 납탄사용 억제, 골프장 등에 대한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조사 등을 통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철저

4. 토양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

4-1. 토지용도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설정

- 현재 가, 나 지역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는 토양오염기준을 주거지, 전·답, 공장용지 등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토양관리를 효율화(연구용역 실시 후 법개정 추진)

4-2. 토양복원업 등록제도 및 복원 감리제도 도입

- 토양복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토양복원업 등록제도와 부지복원이 이루어진 후 정상복원 여부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복원감리제도를 도입

4-3. 토양오염위해성평가 제도화

- 위해성평가 연구용역('02. 7~'03. 1)결과를 토대로 토양복원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강구

5. 폐금속광산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

5-1. 토양정밀조사 실시

- 충북지역 27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
(용역사업)
 - 정밀조사 대상 158개 광산중 2001년까지 76개소 완료
 - 2002년 32개소 진행중(경기, 강원, 전남북), '03.6월 완료예정
 - 2003년 27개소 조사 (충북)
 - 2004년 23개소 조사예정(충남)

5-2.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

- 3개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사업 실시
 - 광미 매립 및 오염하천 준설 등(국고 2,570만원 지원)
 - * 붓든광산(봉화), 낙동광산(정선), 송천광산(강릉)
- 관계부처별 공조체제 강화
 - 광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위하여
 산자부, 농림부,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별 역할 강화
 - 산 자 부 : 광해방지사업(70~100%)
 - 농 림 부 : 농경지 오염토양개량사업(80%)
 - 기획예산처 : 토양오염방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
 (50% → 80%)